

# 學界回顧

李 均 成\*

## I. 學會動向

최근 우리 나라의 環境法 研究와 관련하여 가장 괄목할 만한 事實은 1977년 12월에 있었던 韓國環境法學會의 創立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산발적이었던 우리 나라 環境法에 관한 研究를 組織化·積極化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韓國環境法學會의 創立經緯 및 趣旨 그리고 지난 1년간의 學會活動을 概括해 본다.

### (1) 創立準備

우리 나라의 급속한 經濟發展이 물고 온 公害 내지 環境問題와 관련하여 최근 環境法에 관한 研究가 비록 組織的인 것은 아니었지만, 각 分野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展開되어 왔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산발적인 環境法 研究를 組織化하는 것이 앞으로의 公害 내지 環境對策을 위해서 필요하고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7年 여름부터이었고, 그 해 말에 가서야 結實을 보았다.

즉, 環境法分野에 관심을 가진 李尙圭(中央教育研究院 院長)·徐元宇(서울대)·金哲洙(서울대)·梁承斗(延世大)·金東正(辨護士)·具然昌(慶熙大) 등 몇몇 在京學者가 非公式的인 접촉을 통하여 環境法에 관하여 體系的으로 調査·研究하고, [또한 특히 積極的인 活動을 펼 수 있는 學會를 조속한 時日내에 結成할 것에 뜻을 모우고, 1977年 11月 18日과 11月 25日의 두 차례의 會晤를 가졌다. 거기서 學會組織의 大綱과 會則草案을 마련하고 우선 環境法의 각 分野에 관심을 가진 學界와 法曹界 및 官界의 15名 내외의 京鄕의 人士를 초청하여, 1977年 12月 7日 學會의 發起總會를 열 것을 결정하였다.

\* 韓國環境法學會 幹事(韓國外大 法政學部教授)

## (2) 創立趣旨

우리 나라의 環境問題가 날로 深刻化·多様化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政府는 環境保全法을 새로이 制定하는 등 적극적인 公害防止 내지 環境保全對策을 樹立·推進하려는 意志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環境保全對策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環境規制나 被害救濟에 관하여는 적잖은 法律的·行政的인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다른 學問分野와의 學際的인 協同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環境法領域의 發展이 강력히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의 環境法에 관한 研究가 워낙 日淺하고 그나마도 非組織的·非繼續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環境法學은 이러한 要請에 副應할 수 없는 實情이었다.

우리의 實情이 이러하기 때문에 環境法學의 發展에 대한 要請은 날로 高調되어 왔다.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環境法研究를 組織化하고 繼續化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環境法研究에 관심을 가진 學者, 行政實務家, 法曹人들의 共同의 對話와 研究의 터전을 만들어 미력이나마 韓國環境法學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韓國環境法學會를 創立하기에 이른 것이다.

## (3) 發起總會

1977年 12月 7日의 發起總會는 서울 乙支路 六街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열렸는데, 李尙圭·徐元宇·金哲洙·梁承斗·金東正·具然昌·金南辰(慶熙大)·權龍雨(檀國大)·李均成(韓國外大)·金洪奎(成均館大)·鄭萬朝(서울高法判事)·朴鉉圻(法制處企劃管理官)·張仁錫(法制處專門委員) 등 諸氏가 참석하였다. 다만, 1978年 學會事業費의 確保를 위하여 設立節次를 급히 서둘러야 했던 不得已한 사정으로 地方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같이할 수 없었던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었다.

이 發起總會에서, 學會의 名稱을 「韓國環境法學會」로 결정하고, 學會의 事務所는 韓國法學院 내에 두기로 함으로써 韓國法學院 산하의 學會의 하나로 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會則을 審議하여 採擇하였으며(本誌 附錄 會則 참조). 任員選任에 관하여는, 會長에 李尙圭 院長, 副會長에 徐元宇교수와 金洪奎교수를 선출하고, 그 밖의 任員(常任理事·監事·幹事)은 會長團에 그 選出을 일임하였다.

위 會長團은 1977年 12月 21日에 모임을 갖고 나머지 任員을 선출하였으며(本誌附錄 任員名單 참조), 여기서 會則 第8條에 의한 顧問으로 文

鴻柱교수(成均館大: 韓國公法學會 會長)와 金曾漢교수(서울大: 韓國民事法學會 會長) 및 徐燦珏교수(國民大: 韓國法學教授會 會長)를 추대하고, 또 保健社會部長官과 建設部長官은 當然職顧問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年會費에 관하여는, 正會員 3,000원, 理事 8,000원, 常任理事 10,000원, 副會長 15,000원 및 會長 2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4) 1978年度의 學會活動

學會는 創立初年度부터 본래 뜻한 바 積極的인 學會活動을 벌이기 위한 알찬 事業計劃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會長을 비롯한 [常任任員陣이 그 事業基金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文敎部의 1978年度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심포지움補助費를 受領하게 되었다.

1978年度의 學會活動을 간추려 보면, 文敎部政策課題研究費에 의한 研究의 推進, 한 차례씩의 研究發表會와 심포지움, 學會誌의 發刊이 그 주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을 위한 네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 (가) 第1回 研究發表會

- ① 日時: 1978년 7월 14일
- ② 場所: 스칸디나비아클럽(서울 乙支路 六街)
- ③ 參席人員: 21명
- ④ 發表要旨:

##### i) 李尙圭: 「環境保全法の 問題點」

주로 立法技術 내지 方向에 대한 檢討를 하였다. 즉, ① 環境規制의 段階性的 不考慮, ② 복합적 規制方法·手段의 채택 필요, ③ 被害救濟 規定의 未備, ④ 環境規制의 만네리즘 방지를 위한 對策의 未備, ⑤ 費用負擔規定의 消極性 등이다.

##### ii) 具然昌: 「公害判決의 檢討」

入手可能한 限度內的 우리 나라 公害判決의 리스트를 作成하여, 公害事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因果關係, 違法性, 過失에 관한 大法院判決에 대한 간단한 비평을 하고, 公害判例集의 發刊을 提議하였다.

##### (나) 第1回 심포지움

- ① 日時: 1978년 10월 21일
- ② 場所: 檀國大學校 音樂堂
- ③ 主題: 環境保全과 法
- ④ 參席者: 教授·法曹人 등 35명, 學生 40명

⑤ 會議進行

- i) 開會辭(李尙圭)
- ii) 座長(徐元宇, 金哲洙)
- iii) 主題發表 및 討論者

第1題: 環境影響評價

發表者: 鄭萬朝 討論者: 權泰竣, 李勇雨

第2題: 環境污染의 總量規制

發表者: 金政炫 討論者: 具然昌, 金東攻

第3題: 環境污染의 刑事責任

發表者: 金鍾源 討論者: 金東正, 金興東, 朴貞根

第4題: 環境污染과 行政救濟

發表者: 金南辰 討論者: 權龍雨, 朴鈺圻

第5題: 環境污染의 私法的 救濟

發表者: 金基洙 討論者: 吳錫洛, 全昌祚, 鄭權變

(위 主題發表者 論文은 모두 本學會誌에 掲載되었음)

## II. 法制整備

1977년 및 1978년은 環境關係의 法制整備가 대폭적으로 實現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環境立法史上 획기적인 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環境保全法과 海洋汚染防止法이 1977년 12월 31일 制定·公布되었으며, 環境行政을 위한 保健社會部의 職制가 擴充된 점이 特記할만 하다. 이러한 法制整備를 계기로 直接·間接으로 環境法研究의 活性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 (1) 環境保全法의 制定

우리 나라에서도 先進諸國의 立法趨勢에 좇아 1963년 法律 第1436號로 公害防止法을 제정하였다. 工業立國을 통한 近代化를 國家의 至上課題로 설정함에 잇따라 마련된 이 法은 제정당시만 해도 많은 기대를 걸게 하였으나 그동안 거의 死文化되다시피 하였었다. 그것은 法の 제정은 있었지만 公害行政을 담당할 機關도, 法の 시행에 필요한 施行令도, 豫算의 策定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0年代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産業化·都市化에 따라 公害現象이 점차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자 政府도 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1971년 1월에는 死文化되다시피 했던 公害防止

을 대폭 修正・強化하여 보다 적극적인 公害對策에의 意志를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法 自體가 未備할 뿐 아니라 公害을 위한 豫算策定, 機構擴充, 要員確保 등 강력한 施策이 뒤따르지 못했었고, 특히 國民의 環境認識의 不足으로 法의 바람직한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第4次 經濟開發 5年計劃의 추진과 함께 우리의 環境問題가 더욱 深刻한 것으로 浮刻되자 그 동안 수차례 걸친 公害防止法施行令 및 同施行規則의 改正・補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존 公害防止法體制로써는 우리의 環境을 保全할 수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保健社會部는 1977년 봄부터 새로운 立法作業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月 新環境保全法案을 완성하였으며, 政府는 이를 第98回 定期國會에 政府案으로 제출하였다.

이 政府案의 제출에 즈음하여 朴容萬議員 등 56명의 國會議員이 公害防止環境保全法案을 제안하였다. 國會保社委小委員會에서는 政府案과 朴容萬議員案을 심사한 결과 이 兩案을 廢棄하고 同委員會의 代案으로 마련된 環境保全法案을 原案대로 채택한 형식으로 環境保全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環境保全法으로 채택된 同小委員會의 代案은 政府提出의 法案에 약간의 기술적인 補完이 가하여진 데 불과한 내용의 것이었다.

어떻든 環境保全法은 지금까지 未備・不完全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점들이 많이 擴充・強化되어, 종래의 公害防止法에 비한다면 훨씬 補完된 立法으로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環境保全法은 1978년 7월 1일부터 施行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6월 30일에는 대통령령 제9066호로 環境保全法施行令이, 그리고 7월 1일에는 보건사회부령 제602호로 環境保全法施行規則이 公布되었다.

## (2) 海洋汚染防止法の 制定

최근 세계적인 石油需要의 增大에 따라 海上輸送되는 石油의 量이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동시에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도 增大되어, 만약 이를 放置한다면 全海洋이 기름으로 汚染되고 말 危險性을 안고 있다. 또한 經濟의 비약적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 및 生産・消費構造의 變化 등에 따라 産業廢棄物과 一般廢棄物도 해마다 방대한 量에 달하고 이것을 海洋處分하는 것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海洋汚染源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船舶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및 廢棄物에 의한 海洋汚染의 廣域의 進行은 현재는 물론 장

래에 걸쳐 海洋利用의 便益을 沮害하고, 더 나아가 海洋의 自然環境破壞를 통하여 人間의 生存環境의 保全에 예측할 수 없는 惡影響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海洋汚染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그 對策의 필요성은 날로 高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公害防止法이 陸上의 汚染源의 排出만을 그 規制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海洋汚染의 防止는 거의 放置하다시피 하였으며, 다만 汚物清掃法, 港灣法, 開港秩序法 등에서 일정한 海域에서의 汚染物投棄, 水質汚損 行爲 등을 금지하는 것이 高작이었다. 다행히도 1977년 12월 31일 政府는 環境保全法과는 別個의 法으로 海洋汚染防止法을 制定·公布하고 1978년 7월 1일부터 施行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公害對策 史上 획기적인 것으로서 政府가 海洋環境의 보존을 요청하는 國際的·國內的인 世論에 호응하기 위하여 단행한 快舉라 할 것이다.

### (3) 環境保全機構의 擴充

環境問題의 심각화·다양화에 대처하여 環境行政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環境規制의 權限을 一元的으로 管掌하고 동시에 環境保全關係行政에 關하여 綜合的 調整權能을 가진 行政機構의 存在가 불가결한 前提가 된다. 따라서 先進諸國의 경우 環境保護處 내지 環境廳의 設置를 비롯한 對策機構의 擴充과 規制權限의 集中化를 圖謀하는 傾向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環境行政의 總括的 機構는 없고, 一般的 中央行政機構는 保健社會部이다. 지금까지의 保健社會部의 公害防止行政擔當機構의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점진적인, 擴充을 圖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1963년 公害防止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法의 執行을 담당할 기관이 없었는데, 1967년 2월 처음으로 環境衛生課에 公害係의 탄생을 보았다. 1970년 2월에는 衛生局내에 公害課로서 승격되었으며, 1975년 9월에는 環境衛生局내에 大氣保全課와 水質保全課로 分化·擴充시키면서 公害管理官制度를 두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와서는 環境管理官制度를 두고 環境企劃課, 大氣保全課, 水質保全課로 그 機構 擴充을 기하였다.

1977년 7월에는 國務總理 管掌 아래 環境保全委員會를 설치하여 環境保全에 關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을 審議하도록 하였으며, 1978년 7월에는 環境保全法上의 機構로서 國立環境研究所를 설치하여 環境保全에 필요한 試驗·調查·研究·技術開發·資料分析·要員訓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環境保全에 關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한 中央 및 地方環境諮問委員會를 설치하였다.

### Ⅲ. 研究活動

環境關係의 法制整備는 직접·간접으로 環境法에 관련된 研究活動의 活性化의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環境法研究의 組織化는 韓國 環境法學會의 創立을 통하여 實現되었다. 그리고 各種 團體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研究發表會가 잇따라 열렸고, 특히 環境法關係의 文獻들이 多數 出刊·發表되었다.

#### (1) 세미나

##### A) 韓國公害防止協會 主催 「環境保全法解說」 세미나

- 가) 日時: 1978년 6월 10일
- 나) 場所: 서울大學校 教授會館
- 다) 主題:

- ① 環境保全法의 特質(金政炫)
- ② 環境規制의 方法과 手段(具然昌)
- ③ 環境汚染의 刑事責任(金興東)
- ④ 環境汚染과 被害賠償(徐元宇)
- ⑤ 經濟成長과 企業의 地位(郭相瓊)

##### B) 韓國環境法學會 主催 「環境保全과 法」에 관한 심포지움

- 가) 日時: 1978년 10월 21일
- 나) 場所: 檀國大學校 音樂堂
- 다) 主題: (省略)

##### C) 大法院 主催 「環境問題와 裁判」 세미나

- 가) 日時: 1978년 11월 15~17일
- 나) 場所: 大法院 3別館 講堂
- 다) 主題:

- ① 日本의 公害訴訟과 그 審理方法(吳錫洛)
- ② 우리 나라 公害訴訟의 判決例(金永振)
- ③ 公害事件의 辯論(因果關係證明의 方法 및 程度)에 관한 高찰(조운)
- ④ 公害의 複數原因者의 責任(共同不法行爲論)(千慶松)
- ⑤ 美國에 있어서의 公害救濟訴訟으로서의 集團訴訟(Class Action)과 市民訴訟(Citizen Suit)(李載厚)

- ⑥ 美國의 環境法・環境訴訟概說(鄭萬朝)
- ⑦ 公害防止訴訟(李勇雨)

## (2) 研究發表

### A) 韓國環境法學會 第1回 研究發表

가) 日時: 1978년 7월 14일

나) 場所: 스칸다나비아안 클럽

다) 主題:

① 環境保全法の 問題點(李尙主)

② 公害判例의 檢討(具然昌)

### B) 韓國民事法學會 研究發表

가) 日時: 1978년 11월 18일

나) 場所: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다) 主題: 判例를 中心으로 본 公害에 관한 問題點(金顯泰)

## (3) 環境法關係 文獻 發刊

(가) 單行本

- ① 安基熙・公害管理와 環境保全法解說, 公害對策技術協力會, 1978. 7.
- ② 具然昌・環境保全法解說, 尙志文化社, 1978. 8.
- ③ 柳淳錫・環境保全法(理論과 實務), 法文社, 1978. 9.

(나) 論文

- ① 鄭萬朝・「環境權에 관한 考察」, 法曹, 第27卷 第4號(1978. 4).
- ② 具然昌・「公害의 私法的 救濟」, 考試界, 1978年 4月號.
- ③ 全昌祚・「日照權侵害의 私法的 救濟의 法理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東亞大 韓國公害問題研究所) 第2卷 第1號(1978. 5).
- ④ 具然昌-李根七・「環境汚染防止의 制度的 接近方法」, 慶熙法學 第15卷 第1號(1978. 5).
- ⑤ 具然昌・「環境汚染의 法的 規制: 環境保全法을 中心으로」, 大韓辯護士協會誌, 1978年 8・9月號.
- ⑥ 李勇雨・「受忍限度論」, 法曹, 第27卷 第10號(1978. 10).
- ⑦ 鄭萬朝・「水質汚染의 公法的 規制」, 法曹, 第27卷 第11號(1978. 11).